

공증인 수수료에 대한 단상(斷想)

박 종 순

대한공증인협회 협회장

제가 협회장으로 취임한 후, 협회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6회에 걸쳐 서울, 부산, 수원, 인천, 광주, 대전에서 공증인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협회가 공증인과의 간담회를 가진 목적은 회원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친선을 도모함은 물론 공증 실무의 최전선에서 공증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공증인들로부터 직접 고충과 민원을 듣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에 맞게 실제로 간담회에서는 여러 가지 공증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회원들이 가장 많이 제시한 것은 바로 “공증인 수수료가 시급히 현실화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실제로 모든 회원들은 공증인 수수료의 현실화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개정, 즉 공증인 수수료의 현실화와 관련한 협회의 활동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3년 6월 협회는 법무부장관을 예방하고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대한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이후 협회는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현행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 적절한지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8월 법무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증인 수수료를 공증 실무의 현실에 맞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협회가 ‘공증인 수수료 규칙 개정(안)’을 건의하자, 2023년 10월 법무부는 ‘한국산업정보연구소’에 공증인 수수료 규칙과 물가지표의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2023년 12월 위 연구소로부터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인터넷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올렸습니다. 위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르면, 공증인 수수료는 인건비 상승률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수수료 인상 요인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만을 적용하더라도 현행보다 44.7%가 인상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법무부는 2023년 11월 한 달 동안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일반 국민 외에 전국 공증사무소의 공증인을 대상으로 ‘공증인 수수료’와 ‘전자공증제도’에 관한 인식 및 평가 등에 관하여 여론조사를 하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2024년 4월 협회는 법무부장관을 예방하고,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대한 개정을 재차 건의하였습니다. 그 후 법무부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증인 수수료와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여론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까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의 개정을 위한 구체적 모습이 보이지 않자 2024년 10월 협회는 법무실장을 예방하고 다시 한번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관한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처럼 협회가 공증인 수수료의 현실화를 건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4년 동안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물가 인상, 직원 급여 인상, 사무소의 차임 인상 등 공증사무소의 고정 비용의 증가를 고려할 때, 지금의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수회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주요한 개정 이유는 물가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수수료의 인상·조정을 통한 공증업무의 원활한 운영의 필요, 공증인의 업무 난이도의 높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종전의 개정 이유를 고려하면, 지금의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예를 들겠습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3조가 정하고 있는 ‘목적가액의 산정불능의 경우’ 그 가액 기준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소송의 소가와 그 제를 같이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은 개정을 통해 소가 인정액을 2,000만 100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2006년에 2,000만 100원으로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인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에 개정된 현행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일부

수수료를 인상한 부분도 있지만,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의 상한을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하하였고, 외국어로 적은 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를 일반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의 3배로 하던 것을 2배로 조정하여 수수료를 인하하였으며, 위임장 인증에 대한 수수료를 종래 5천 원에서 3천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증인 수수료는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인상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일부 공증인 수수료의 인하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한편 공증사무 처리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공증사무 처리 건수의 감소로 인해 공증인의 수입은 줄고, 이에 반하여 공증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늘고 있어, 공증인은 사무소 운영에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공증인의 품위 향상을 위해서는 공증인 수수료가 현실에 맞게 반드시 인상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최근 2년 동안 일반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물가상승과 변호사 사무소의 실비 증가 등을 이유로 45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22퍼센트가 인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증인 수수료의 인상이 꼭 필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목적가액의 산정불능 시 가액 기준이 반드시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증인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한 핵심입니다. 즉 법률행위의 목적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가액 기준 2천만 100원은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을 고려하여 최소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등의 작성에 대한 정액 수수료가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을 기준으로 1,500만 원까지는 4단계로 나누어 정액 수수료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때 각 단계별 정액 수수료가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셋째, 법인 의사록 인증 수수료가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법인 의사록 인증 시 공증인법과 상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서류도 방대하여 공증인의 업무량과 업무강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법인 의사록에 대한 공증사무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수수료 3만 원은 매우 낮으므로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요컨대, 현행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반드시 상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공증인의 염원이자 협회의 숙원사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